

2021년 주상면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6. 14. ~ 6. 17. / 4일간
- 감사범위 : 2019. 9. 15.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II 감사결과

1] 예산·회계분야

1) 신용카드 발급, 보관·관리 소홀

- 감사범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리공무원이 교체 되었음에도 지방자치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아 카드 비밀번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건설업 면허 적용 부적정

- 「○○○○○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공종인 준설공사는 '준설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시행하여 건설업 면허 적용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감사범위 기간 동안 면정협조자 격려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13건, *,***천원의 격려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재부산거창 향우회 격려금 지급 등 23건, *,***천원을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능 대상임에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 ▽▽ ▽▽▽ ▽▽▽▽」 등 11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받침으로 철근에 스페이서를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함에도 피복두께를 위한 철근받침에 미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

4)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 「▼▼ ▼▼ ▼▼ ▼▼▼▼▼▼」 등 23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3] 세무분야

1)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 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나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중세포함) *,***천원을 누락한 하였음.

2)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 신규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원을 누락하였음.

3) 신축건물 등 대장 미등록에 따른 재산세 부과 누락

- 건축물분 재산세는 공부상의 등재현황(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등)에 따라 과세하되,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무허가 건축물로 통보되거나, 조사담당자의 현황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 포함) 현황이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공부상 사용승인이 확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중세포함)의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당하게 과세 누락되었음.

4] 복지분야

1)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치매노인 7명에 대해 본인관리 가능 여부 확인 지연(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지연)으로 급여관리에 대한 적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2) 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 업무 소홀

- 감사범위 기간 동안 3건에 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상태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상태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 통합사례관리사업 민원서류 미징구

-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제공계획 동의서'를 미징구 하였음.

4)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미실시

-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 등 5명에 대해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 재발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미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 미준수

-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부서장의 사전 결재 없이 추가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을 미준수 하였음.

5] 산업분야

1) 직불금 승계처리 부적정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 등 9명의 사망자에 대한 승계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직불금 신규농가 확인 부적정

- 2019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규 신청 36농가, ***필지와 2020년 공익직불제 신규 신청 30농가, **필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통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 없이 신규대상자로 확정하였음.

6] 주민분야

1)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처리 소홀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접수인 및 발급번호 표시를 누락하였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발급 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접수 소홀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접수를 하면서 신청인 및 열람대상자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교부를 하여야 하는데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위임자 신분증을 누락하였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전자서명기로 서명을 받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도 교부를 하는 등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업무 전반을 소홀히 하였음.

3) 인증기용 증지수입 수납처리 지연

- 인증기용증지 수납업무를 수행하면서 짧게는 1일, 길게는 10일 까지 수납 처리를 지연(000건)하여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7] 기타분야

1) 공용차량 정비·수리대장 미작성

- 공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유차량을 수리 및 정비하는 경우 차량정비·수리대장에 기록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정비·수리내역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에

-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이용 현황 등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9년과 2020년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3)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면서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하지 않고, 파기시 파기자 및 처리자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된 것으로 표시한 비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 보관기간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과 재발간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대외비를 보관하고 있었음.